



#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기준

## 목적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Trade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Trade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직업 학교, 기타 민간 교육 시설 및 서비스의 소유자/운영자, 그 직원, 계약자, 벤더, 고객/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 및 서비스 유형에 적용됩니다. 외국어 학교, 시험 준비 및 과외, 자동차 운전 교습소, 컴퓨터 교육, 전문 및 경영 개발 교육, 화장품 및 이발사, 비행 훈련, 인명 구조 훈련, 자기 계발 학교 및 기타 무역, 직업 및 기술 학교. 본 지침은 고등 교육 기관 또는 프리스쿨에서 12학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현재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의 운영 및 활동 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고등 교육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Higher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및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프리스쿨에서 12학년까지 대면 수업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In-Person Instruction at Pre-K to Grade 12 School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이 각각 적용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 또는 프리스쿨에서 12학년까지 학교 부지에서 진행되는 직업 또는 민간 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교육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및 의무 준수 계획과 본 임시 지침에 포함된 예방 조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교육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및 의무 준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DOH 발표한 산업별 지침(예: 건설, 제조, 퍼스널 케어)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당 산업별 DOH 지침과 이 문서에 설명된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반드시 DOH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소매 활동을 하는 곳은 위치에 관계 없이 DOH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설의 사무실 기반 활동은 DOH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모든 직업 학교 또는 민간 교육 시설 또는 서비스는 자유롭게 추가적인 예방 조치나 제한 사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직업 학교, 민간 교육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최선

요건을 알고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 활동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운전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전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주 몇몇 지역에서 재개 2단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안전한 재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의 포괄적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집계하는 초기 경고 대시보드를 새롭게 사용하여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전문가가 바이러스 억제 방법을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2020년 6월 12일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에 Cuomo 주지사는 주의 여러 지역이 2020년 6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재개 4단계 진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자로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의 모든 지역은 주 재개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 운영에 대한 기준

직업학교 및/또는 민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최소 주 기준을 따라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방 요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모든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 활동에 적용됩니다. 직업 학교 및/또는 민간 교육 센터/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지침의 목적에 따라, 여기에 언급된 "시설"이라는 용어는 직업 학교 또는 민간 교육 활동 또는 운영이 이루어지는 교육, 사업, 상업 건물, 주거지 또는 주거용 건물, 차량 또는 기타 장소에 위치한 모든 장소 또는 학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내 인력 및 고객/학생을 점유 허가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대해 최대 점유 인원의 50 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직계 가족/가구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하는 직원 및 고객/학생을 포함합니다. 또한 모든 경우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시설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단, 고객이 만 2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 고객/학생 등 모든 사람이 항상 서로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책상 간 간격 등). 이러한 조항은 기관을 방문한 단체가 동일한 가구/가정 또는 단체의 구성원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안전 또는 핵심 활동에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금전 등록기 운영, 물건 이송 및 적재, 엘리베이터 탑승, 차량 운전 등), 사람들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6피트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간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 내에 있을 때, 그리고 고객/학생과 접촉할 때(학생 교습) 언제나 거리에 상관 없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이 6피트 이내에 오면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가정/가구 구성원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N95 마스크 또는 기존 산업 기준에 맞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따릅니다.

- 안면 가리개 요건은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장애인법 및 뉴욕주 및 시 인권법(City Human Rights Law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 착용 또는 물리적 장벽 설치(예: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달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에서 플라스틱 차폐벽)을 제공하고 사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유 작업장(예: "핫 데스크")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객/학생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열해야 합니다. 불가능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책상 간 물리적 장벽 설치.
  - 붙어 있는 책상을 막거나 제거.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물리적 장벽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예: 플렉시 글라스 또는 칸막이) 직원은 일하고 고객/학생이 지도를 받을 때 직원과 고객/학생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시설 레이아웃을 수정하도록 권장받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금전 등록기 뒤편, 비품실, 엘리베이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동일한 가구/가정 구성원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공간에서 건강 및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또한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실내 구역과 주로 줄이 생기는 장소 또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예: 출퇴근 기록 장소, 건강 검진 장소, 휴게소, 장비 확인실, 계산대, 탈의실 등)에 6피트 공간을 나타내는 신호 및 거리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책상, 워크스테이션 및 기타 공용 작업 영역 또는 시설 내에서 밀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주위에 6피트 거리의 원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대기 공간 폐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좌석 공간 배치(예: 의자, 테이블)를 변경하거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업장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19 표지와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알립니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알립니다.
- 그들이 최근에 DOH 여행 권고에 따른 주요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주를 방문했다면 격리해야 함을 알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모임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 대면 모임(예: 수업, 회의, 근무 시간) 대신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를 사용하고 권장할 수 있으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고용주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을 따라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선호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수업 또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서로 6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직원 편의공간을 폐쇄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욕실에 대한 모범 관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6피트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변기 및 싱크대, 비누/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사이에 장벽 설치.
  - 비접촉식 비누 및 종이 수건 디스펜서 사용.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 범위에서 모든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즉, 6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C. 운영 활동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서로 연관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가족, 가정, 또는 단체)가 근접하거나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식으로 단체 활동 및 수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의 요구 사항(예: 취약한 인구), 기술적 능력 및 수용 인원 제한에 따라 기존의 대면 및 원격 수업의 혼합 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예약 없는 수업 진행을 제한하고 사전 수업 등록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예약을 한 고객/학생에 대해 약속 시간까지 차 안에서 또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진 밖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 당사자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약속 시간을 부여하고 약속 시간까지 차 안에서 또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진 밖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수업 또는 근무 시간 조정
  - 시설 출근 직원을 근무지 필수 인력으로 제한.
  - 원거리 학습 옵션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현장 인력을 감축.
  - 직원 또는 고객/학생 단체 또는 분반(예: A/B 팀)을 나누어 수업을 교대로 진행.
  - 다른 수업을 듣는 고객/학생 간의 접촉을 줄이고 공용 공간 밀집을 줄이기 위해 현장 수업 일정 교대로 지정.
  - 가정/가족 구성원/법적 보호자가 시설 밖에서 등원 및 퇴교를 위해 대기하도록 함.
  -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활동 나누기,
  - 전화, 복사기, 인쇄기, 금전 등록기 등 사무실 장비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개발.
  - 사용 및 밀접한 장비 보관 사이에 적절한 세척 및 소독 없이 공유 장비(교과서, 필기구 등)의 사용 및 보관 금지.
  - 사용이 가능한 장비(세척 또는 소독 완료)에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
- 책임 당사자는 DOH 지침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개인, 일대일 레슨 (예: 운전, 비행, 음악, 외국어 수업)은 예약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밀폐된 공간 (예: 차량 내)에는 반드시 한 명의 고객/학생과 한 명의 교사만이 이용해야 합니다.
- 재택 서비스(예: 가정 방문 교육 등)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겹치지 않도록 지정 시간을 고지하고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학생에게 비접촉식 등록 및 선불, 또는 예약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고객 카드, 모바일 장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다른 수업 또는 고객/학생 단체를 직원이 "돌아 다니지" 않도록 직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요구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게임 시설 내부로 직원 및 고객/학생의 통행량 및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내에서 걸어 다니는 직원, 고객/학생의 양방향 도보 인구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단막, 테이프, 표지판을 사용하여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화살표를 표시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입구 및 출구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접촉(기관을 떠나는 사람의 출구 및 기관에 입장하는 사람의 입구를 지정하는 등) 및 이동(직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하는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건물으로의 이동량을 관리 및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관리하고 (2) 건강 선별 검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재 안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하기의 내용처럼 입구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대기열을 두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 대기 구역을 배치하여(줄, 주차장 등)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고 구역 내의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출납원 또는 접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과 직원(예: 플렉시 글라스) 간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시행할 때 가능한 한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상품 또는 장비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접촉식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배송 진행 과정 동안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 화물을 옮기기(예: 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에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품을 적재하기 시작 전에 손을 소독하고, 모든 물품을 적재한 후 다시 손을 소독하여 마무리).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한 경우에만 직원, 고객/학생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단, 나이가 2세 미만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행정명령 202.34호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그러한 개인이 항상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현재 마스크 대신 안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한] 대안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수중 환경(예: 인명 구조 훈련)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의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책임당사자는 입술 및/또는 입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교육이나 지시의 경우(언어 치료 등), 대체 PPE(입 근처나 입 전체가 투명한 안면 가리개 등)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안면 가리개는 교수진 또는 교직원의 얼굴을 보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학생(예: 청각 장애인)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이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공용 구역 또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예: 시설 입장, 직원과 접촉), 또 자신의 가족 구성원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6피트 이내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고객/학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고객/학생이 만 2세 이상이며 이러한 가리개 착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6피트 이내에 있을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학생과 접촉할 때(예: 강의 진행, 차량 내) 거리에 관계 없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고객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정 교사 등)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고객/학생과 접촉할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직원 및 고객/학생 모두 다른 사람과 6피트 이내에 있거나 또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가정 방문 서비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6피트 이내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하는 동안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작업장 활동에 필요한 PPE 외에,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입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되는 해당 안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고객/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및 기타 필수 PPE 재고를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킥 컷,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 사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가 통상적으로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개인의 얼굴 가리개(허용 가능한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나 얼굴 가리개를 스스로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용 안면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업무 특성상 더 보호가 잘 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적용가능한 OSHA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 레지스터 및 차량과 같은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품을 취급할 때 장갑을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학생에게 안면 가리개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소독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공용 공간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 교실 입구, 출구, 엘리베이터, 등록/리셉션 데스크 등). 가능한 경우 자동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PPE를 포함하여 더러운 품목을 폐기할 수 있도록 시설 주변에 쓰레기통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책상, 칠판) 및 장비를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할 수 있도록 해당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만지거나 장비를 사용한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직원이 반환된 모든 장비 및/또는 교체(예: 교체, 필기구)를 매번 사용 후 또는 가능한 자주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학생은 사용 전후에 사용한 모든 교재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이 보유한 장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운영 기간 동안 고객/학생이 장비/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장려해야 합니다(예: 개인은 한 대의 컴퓨터만 사용).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들이 자신의 장비/자료(예: 필기기구, 교과서)를 가지고 올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매번 사용 후 철저한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하지 않고 붙어야 하는 장비 또는 도구(예: 관악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학생은 자신의 장비 및/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이 수업이나 기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물티슈 등의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책상 옆에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당사자는 사용 후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모든 임시 사용 장비/교재를 고객이 "반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도서 및 종이 자료에 대한 적절한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취급하기 전에 직원과 고객/학생이 적절한 손 위생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커버와 디지털 미디어로 구성된 도서는 세척 후 소독제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매번 사용 후 모든 차량 및/또는 비행기를 청소해야 하며, 이전 사용 당시 좌석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앞좌석과 뒷좌석을 모두 청소해야 합니다.
  - 조종석에 민감한 전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 70 퍼센트 이소프로필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소독 제품을 제공 (및/또는 청소 직원이 사용하도록)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일회용 스티어링 휠 커버 및/또는 시트 커버를 매번 사용 후 교체하여 오염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최소 매일 두 번,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 재료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비 또는 재료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최소한 통행량이 많은 모든 구역 및 밀접 접촉면(예: 좌석, 책상, 공유품)을 포함하여 해당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 시설을 방문했거나 사용한 후 **8일** 이상 지났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지불 장치, 화이트 보드 마커), 구역(예: 좌석 구역, 화장실) 및/또는 표면(예: 문, 책상)의 취급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구역 및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을 어렵게 만드는 천 시트 또는 기타 좌석에 시트 커버를 씌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트 커버는 매번 사용 후 또는 최소 4시간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음식 및 음료 공유를 금지하고(예: 셀프서비스 식사 및 음료), 직원에게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직업 학교 및 민간 교육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 재개를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재개방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학생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커뮤니케이션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고객/학생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과 고객/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CDC 및 DOH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이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설 내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III. 절차

####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하청업자 및 벤더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 조치는 고객/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선별 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이 시설에 입장하기 전 원격(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에 대해 선별 검사 실시가 필요하며,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접촉한 사람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했는지 여부.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을 하나라도 겪음. 및/또는
    - d) 지난 14일 이내에 24시간 이상 상당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있는 주를 여행함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있는 주와 검역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부 여행 권고를 참조합니다.
- 선별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간 및 건물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건물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원격 방식으로 또는 도착하여 바로 선별 검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입장을 허락합니다.
  - 체온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물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직원을 확인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추적관찰 선별을 완료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학생이 건강 검진을 완료하거나 연락처 추적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교육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과 더불어, 체온 검사는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절대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선별 설문 응답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시설에 대해 식별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계약자 및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고객/학생 및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기록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B. 추적 조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학생, 가능한 경우 하청업자 및 벤더를 포함한 시설 내 개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견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과 확진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의 48시간 전부터 시설에 입장했다고 기록된 모든 직원, 하청업자, 벤더, 고객/학생(가능한 경우)의 정보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에 있다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의 직원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시설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직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고객이 동의할 방법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